

방화(放火)로 인한 화재사례

최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된 주택이나 건물 등에 고의로 화재를 내는 보험사기성 방화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손해사정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보험사기성 방화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글 | 김영중 카스코화재해상손해사정(주) 대표이사

1. 머리말

보험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각종 보험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제3자들은 보험사를 기망하고 보험제도를 악용, 남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함으로써 대다수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상황이 지금도 그칠새 없이 전국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철면피요,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집단이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또 모든 범죄 사실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범죄 수법 역시 지능화, 조직화, 흉포화 되고 있어 보험업계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화재사고에 대해서 최초에 입장하는 소방, 경찰 등이 감식, 감정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라 판단되고, 위와 같은 보험 범죄는 곧 치안과 직결되는 문제

로서 보험 산업의 발전과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국민을 위해 심도 있는 수사의 공조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는 33년간 손해사정업에 종사하면서 빙자는 물론 부유층, 심지어는 돈 많은 기업까지도 보험금을 더 타내려고 저지른 보험범죄의 사례를 무수히 보아왔다. 위선과 술수에 능한 이와 같은 보험 사기범들의 범죄를 적발해 내는 관련자들은 고도의 두뇌 싸움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을 위한 과학적 수사와 치밀한 사전준비, 시간 및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다.

이에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손해사정의 조사과정에서 수사 기관에 의뢰하여 검거된 방화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고하고자 한다.

2. 사례 : 회사의 임원들과 공모해 보험금을 노린 방화사고



가. 보험가입현황

보험사	계약일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A 사	1996.11.21 ~ 2001.11.21	건물	9천만원	1억4천만원
		기계	3억7천8백만원	3억2천7백만원
		동산	1억5천만원	1억5천8백만원
B 사		리스기계	1억1천5백만원	1억1천5백만원
계	-	-	7억3천3백만원	7억4천만원

나. 화재 개요

- (1) 일 시 : 1998년 2월 3일, 24:00경
(2) 장 소 :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음현리 소재 ○○ 키친 공장 내
(3) 경 위

계약자의 진술에 의하면, 1998년 2월 3일 18:30 경까지 근무하다가 대부분 퇴근하였고 공장장 조○○가 조금 더 있다가 퇴근, 사무실 담당자 김○○가 문을 잠근 후 19:30경 마지막으로 퇴근하였다. 한편, 인근에 소재하는 ○○산업(계열사) 종업원 박○○가 이 공장 후면에 놓여진 컨테이너 하우스에 있다가(평소 기숙함), 20:00경 음현리

청년회에 참석하고자 마을 회관으로 갔다.

계약자도 청년회원 9명과 함께 이 회관에 있다가, 자정 무렵 함께 나와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같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마을 이장 이○○가 휴대폰으로 공장에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왔다. 계약자가 곧바로 약 1km 떨어진 공장으로 갔을 때에는 이미 불길이 심하게 번지고 있었으며, 곧이어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하였지만 거의 전소된 상태였다.

다. 범죄 혐의점

계약자는 사고 발생 전 4개월 동안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아 실효상태에 있다가 화재 발생 보름 전에 설계사의 협조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부활시켜 놓았고, 부활 당일 자금 사정에 따라 700만 원을 대출하였다. 또한 기계는 과대한 보험가입과 기계 중 일부는 리스회사 물건으로 다른 보험회사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화재현장 부근에서 플라스틱 기름통 2개가 발견되었다.

● 화재사례 ●

방화(放火)로 인한 화재사례

라. 범죄사실 인지

계약자는 2월 3일 근무 후 20:00경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였고 공장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1:34경부터 수차례 자신의 핸드폰으로 공장과 통화하였다. 또한 공장의 상무인 엄○○와도 화재발생 일시인 2월 4일 00:18 전후로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으며, 본인의 호출기에 자신의 핸드폰으로 4회 호출한 증거가 포착되어 상대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마. 조치 결과

수사기관은 관계 자료를 토대로 방화혐의를 잡고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사장 이○○과 이 회사 영업상무 엄○○, 총무이사 이○○을 일반 건축물 방화 및 사기 미수로 각각 구속하였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요약하면, 피고인 이○○는 제조업체인 싱크대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엄○○는 위 피고인의 동서이며, 이○○는 총무이사로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이다. 당시 IMF 한파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회사 건물 및 기계, 동산에 대해 6억1천8백5십만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을 노리고 고의로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이○○ 사장은 동서 및 사촌동생과 공모하여 1998년 2월 3일, 22:30경 공장 건물 옆에서 기숙하고 있던 직원을 마을회관으로 불러내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미리 준비해 간 양초 5개를 각 5분의 3가량 잘라내어 바닥에 세워놓고 그곳에 시너 2통을 바닥에 뿌린 후 양초에 불을 붙였다. 양초가 일부 탄 다음 신나에 옮겨 붙은 불이 싱크대 가구 및 판자벽을 거쳐 벽돌조 슬레이트 지붕 2층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기계 및 동산 건물을 모두 태워 소훼하는 방화를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장은 보험회사에는 전기

누전으로 인한 실화인 것처럼 화재발생 신고를 하고, 5억2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



● 사진 1 ● 발화건물 전경



● 사진 2 ● 재단실 내부 소손 흔적



● 사진 3 ● 블록 구조의 작업장 내부 소손 흔적



● 사진 4 ● 2층 작업장 소손 흔적